

구미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년월일 : 2012. . .
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1. 제안이유

가정의 문제를 예방하고, 가정의 기능을 강화하는 등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설치하는 건강가정지원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및 명칭에 관한 사항(안 제2조)
- 나. 센터의 기능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- 다. 센터의 조직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- 라.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9조)

3. 조례안 : 붙임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건강가정기본법」 제5조, 제10조, 제34조, 제35조

「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」 제3조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 불임

다. 입법예고 : 의견없음

라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구미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건강가정기본법」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구미시에 설치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센터의 설치 및 명칭) ① 구미시 건강가정지원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안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.

② 센터 명칭은 “구미시 건강가정지원센터”로 한다.

제3조(기능) ①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과 같다.

1. 지역주민 대상 가족 교육 및 가정문제 예방·상담·치료
2. 지역사회에 맞는 건강가정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
3. 지역사회 가정생활문화운동 전개
4. 지역사회 가정 관련 정보 및 자료 제공
5. 지역주민의 가족서비스 지원 및 욕구조사
6. 그 밖에 시 실정에 맞는 다양한 가족지원 서비스 제공

② 제1항의 기능 중 시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.

제4조(시설) 시장은 제3조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실·상담실·자료실 등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 관련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.

제5조(조직) ① 센터는 센터장, 가정상담팀, 가정교육팀, 가정문화팀 등 건강가정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.

②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, 부득이한 경우 비상근(겸직)으로 할 수 있다.

③ 센터장을 제외한 센터종사자는 반드시 상근하여야 하며 최소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, 「건강가정기본법」 제3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건강가정사를 2명 이상 두어야 한다.

제6조(위원회 운영) ① 센터는 사업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구성·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센터 내 자체규정으로 정한다.

③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7조(자원봉사자) ① 센터의 기능 및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.

② 자원봉사자는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.

③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8조(강사) ① 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사업내용에 따라 적합한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.

②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9조(운영 등) ① 센터는 시장이 운영한다. 다만,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목적과 사업 수행에 적합한 기관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수탁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선정한다.

1. 건강가정사업 수행을 위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등 「민법」 제32조에 따른 비영리 법인

2.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

③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, 계약만료 1개월 이전에 센터 운영 실적 및 성과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재계약 할 수 있다.

④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「구미시 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」를 준용한다.

제10조(이용자의 범위) ①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시에 거주하는 가족구성원

2. 그 밖에 센터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이용자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.

제11조(주민참여) ① 시장은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참여

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.

② 주민은 시장에게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.

③ 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 시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.

제12조(지도·점검) 시장은 필요한 경우 센터 시설 및 운영 전반에 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또는 관련 서류를 조사하고 수시로 지도·점검할 수 있다.

제13조(센터의 지원) 시장은 센터의 설치·운영 및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센터에 지원할 수 있다.

제14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센터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 및 운영된 것으로 본다.

관련법령

□ 「건강가정기본법」

제5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)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.

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가족구성원의 특성과 가정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.

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주적인 가정형성, 가정친화적 환경조성, 양성평등한 가족가치 실현 및 가사노동의 정당한 가치평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제10조(지역사회자원의 개발·활용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한 가정구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자원을 최대한 개발하고 활용하여야 한다.

제34조(건강가정사업의 전담수행) 여성가족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사업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제35조(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)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문제의 예방·상담 및 치료,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, 가족문화운동의 전개,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등을 위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(이하 "센터"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

②센터에는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

경험을 가진 전문가(이하 "건강가정사"라 한다)를 두어야 한다.

③건강가정사는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사회복지학·가정학·여성학 등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관련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이어야 한다.

④센터의 조직·운영 및 건강가정사의 자격·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⑤센터의 운영은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.

□ 「건강가정기본법」 시행령

제3조(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등)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·운영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는 센터장과 건강가정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.

② 제1항에 따라 국가가 설치·운영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센터장은 **연도별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, 해당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·인사·복무·보수·회계·물품·문서의 처리에 관한 규정을 정한 후 이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.**

③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·운영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[별지 제2호서식]

구미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재정수반요인

시장은 센터의 설치·운영 및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센터에 지원할 수 있다.(안제13조)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구미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제2호에 의거하여 소요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임.

3. 미첨부 사유

여성가족부 「2012년도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지침」에 의하면 다기능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경우 개소당 지원금액이 지방비 포함하여 연 88,200천원으로 확정되어 있어 소요비용이 연 1억 미만에 해당. 재원의 구분은 국비 50%, 도비 15%, 시비 35%임.

4. 작성자

사회복지과 여성복지정책계 / 사회복지주사보 정순오(전화 5162)